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채현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9.
발의자 : 채현일 · 한병도 · 이해식
이재강 · 문진석 · 이광희
김남근 · 이상식 · 박상혁
장철민 · 김성희 · 양부남
최혁진 · 신정훈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,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,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소방용품 기술발전 및 다양화로 인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제품검사에 대해서만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두고 있음.

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시험인증 인프라의 육성에도 도모하고자 함(안 제46조).

또한, 현행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의 인증업무를 소방청

장이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인증 업무의 단독 운영으로 인하여 다양한 인증수요에 대한
지연 처리, 품질검증의 객관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이에 따라 복수의 전문기관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
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
확보하고,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50
조).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 제목 “(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)”을 “(형식승인 · 성능 인증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소방청장은 형식승인 ·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전문적 ·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(이하 “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제37조제1항 · 제2항,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
2.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업무
3. 제40조제1항 · 제6항,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

제46조제2항(종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방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하고,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제4항 중 “따라”를 “따라 형식승인 · 성능인증 또는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5항 중 “제품검사 업무”를 “형식승인·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업무”로, “있으며,”를 “있으며, 형식승인·성능인증 또는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2호 중 “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”을 “제46조제1항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46조제1항”을 “제4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”를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”로, “한다)”를 “한다) 또는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술원”을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6조(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) <신 설></p> <p>①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 ·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(이하 “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제37조제1항 · 제2항,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</p> <p>2.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업무</p> <p>3. 제40조제1항 · 제6항,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</p> <p>② 소방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하고,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	<p>제46조(형식승인 ·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)</p> <p>① 소방청장은 형식승인 ·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전문적 ·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(이하 “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제37조제1항 · 제2항,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</p> <p>2.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업무</p> <p>3. 제40조제1항 · 제6항,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</p> <p>② 소방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하고,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계속하여 제품검사 또는 실무 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
3.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

4. (생 략)

제50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· 위탁 등) ① (생 략)
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(이하 “기술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 ·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~ 7. (생 략)

③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----- 제46조제1항 각 호의

3. 제46조제2항

4. (현행과 같음)

제50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· 위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
--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
한다) 또는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-----

-----.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
-----.

④ ~ ⑦ (생략)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